

# 건설공사 간접비제도 개선방안

## (하도급공사를 중심으로)

이보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bora@ricon.re.kr)

# 4

##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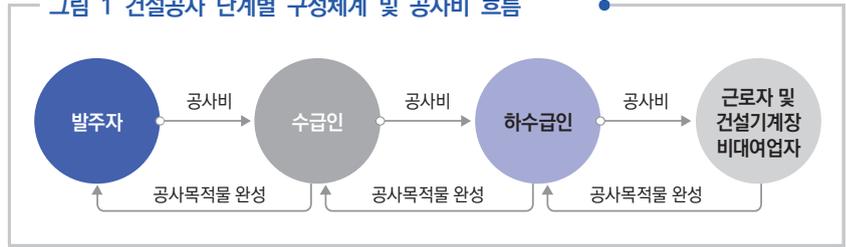
하수급인은 계약 이행에 소요된 간접비를 부담하나 수급인은 연금·건강보험료 등 법령상 간접비만을 하도급내역서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기 연장 시 발생하는 간접비를 당초 계약 시 포기하게 하거나 추가공사 미확보 등의 사유를 들어 하수급인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비를 지급받는데 있어 간접비는 직접비에 비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주기관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간접비를 미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수급인)의 간접비만 조정하고 있으며, 수급인 역시 간접비 부족을 이유로 하수급인의 간접비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한 공사계약 당시 설계 내역서상 뿐 아니라 공기 연장 시에도 제대로 된 간접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간접비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와 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를 야기하여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실태를 파악 후 도출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간접비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하수급인의 적절한 간접비 지급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 간접공사비

그림 1 건설공사 단계별 구성체계 및 공사비 흐름



### 1. 간접공사비 정의

건설공사에서 간접비는 현장사무소 운영비용 및 현장관리 인력 비용, 자재의 보관 및 관리 비용 등으로 공사에 직접 소비되지는 않지만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기가 지연되면 증가하는 것으로 현장유지를 위한 소요비용이다.

표 1 공사비 구성

구분		해당 항목 및 내용
공사비	직접공사비	직접재료비(주요재료비, 부품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간접공사비	간접재료비(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가설재료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이윤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율(%)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
부가가치세		-

출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2018.6.7. 시행·일부 개정)

법정 간접비 항목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발급되는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발급되는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있으며, 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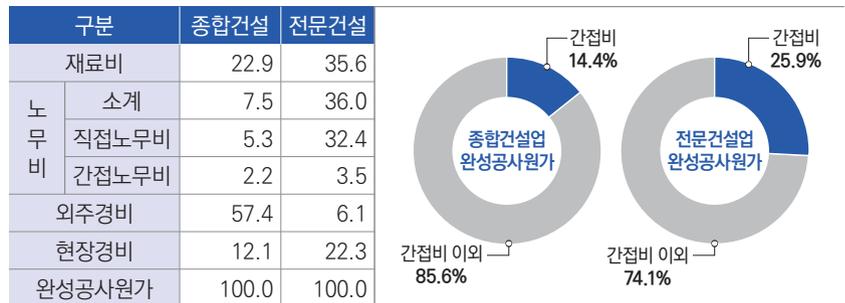
인 강제적 성격이 아닌 권장항목으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간접비 항목으로 안전관리비(제20조), 건설폐기물의 처리(제46조) 등이 있고, 그 이외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항목에는 간접노무비 등이 있다.

## 2. 완성공사원가중 간접공사비 비율

완성공사원가중 간접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종합건설업 14.4%, 전문건설업 25.9%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건설의 간접비 규모가 종합건설의 약 2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합건설은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외주경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간접공사비인 간접 노무비와 현장경비를 더한 비율은 전체 완성공사원가의 14.4%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건설은 노무비가 가장 높은 비율인 36.0%를 차지하고 있다. 간접공사비는 약 25.9%로 분석되었다. 전문건설의 완성공사원가중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종합건설에 비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 완성공사 원가분석 및 간접비 비율

(단위:%)



출처 : 2018년(국가통계포털 참조), 건설하도급 완성공사 원가통계(2019)

## 하도급 간접공사비 지급실태

### 1. 하도급 간접공사비 미계상 실태

불공정 하도급거래(불공정 특약관련)는 비용문제로 간접비는 공사비 거래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며, 내역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신청 건수 총 382건 접수, 공사대금 미지급이 가장 높은 45% 차지, 추가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분쟁금액이 하도급 분쟁중 가

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지급된 추가공사비를 항목별로 구분했을 때,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 미지급이 가장 높았으며(33.0%), 이러한 요인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돌관공사비, 간접비 등 공사금액과 직접 연관된 공사여건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전문건설업체별 하도급계약서 내역서를 비교한 결과, 법적 의무 간접비 항목만 내역서에 제시되어 있고, 이외 항목은 일부 및 전체가 누락되는 등 업체별로 상이하였다.(하도급업체 내역서상 작성되어야할 총 17개 간접비 항목 중 10개 항목 삭제됨)

표 3 간접비 미계상 원인

구 분	구성비(%)
수급인이 제시한 간접비 항목이 삭제된 설계내역서대로 하수급인이 작성함	65
하수급인이 간접공사비 정산의 불편함으로 인해 해당 항목 간소화	14
내역서에 기재하였으나, 수급인에 의해 거절	5
간접비 항목 지급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음	4
기타	12
합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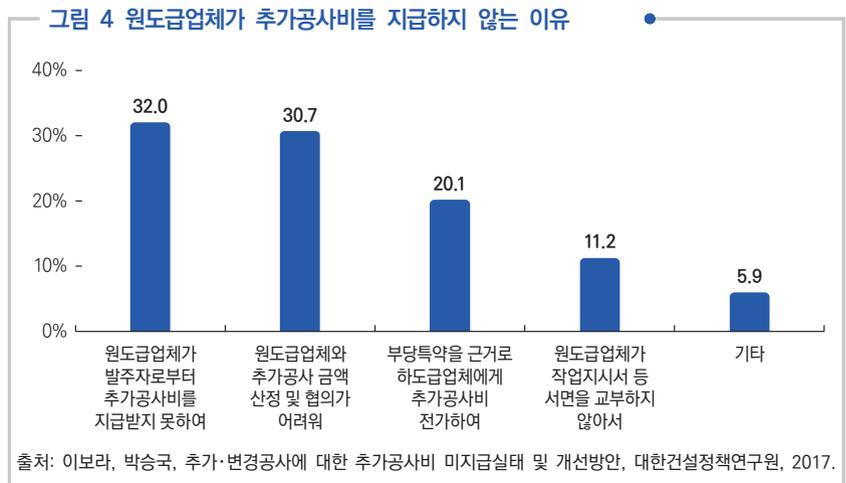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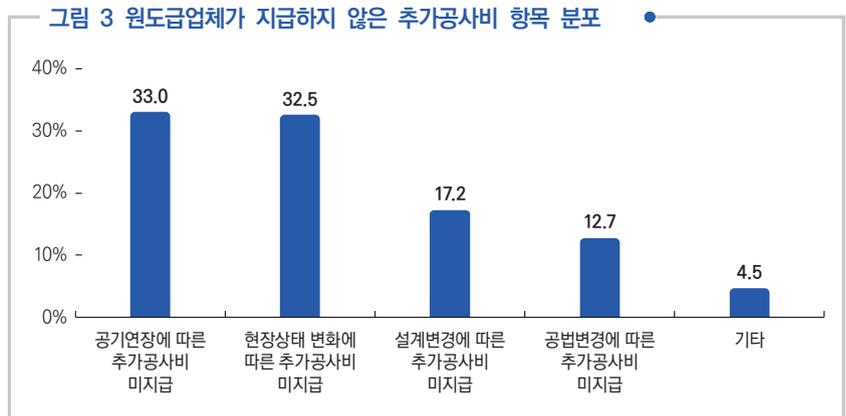
출처: 하도급 간접공사비 계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자료 재작성

그림 2 전문건설업체 하도급계약 내역서 비교



## 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미지급 실태

원도급업체가 지급하지 않는 추가공사비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미지급 비율이 33%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도급업체가 간접비 및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장설명서 등에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 포기각서 및 ‘간접비 미지급에 대한 추가요구 등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당특약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 하도급 간접공사비 개선방안

건설공사 설계내역서상 간접비 미계상과 공사기간 연장시 발생하는 추가 간접비 미지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시하였다.

간접비 미계상의 경우, 하도급내역서에 간접비 항목의 반영과 불공정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용이며, 간접비 미지급의 경우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간접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간접비 미지급시 하수급인의 미지급 확보 방안,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에 공기연장 사유를 추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제안하였다.

그림 5 하도급 간접비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

문제점 및 원인		개선방안
설계내역 간접비 미계상	불공정 하도급계약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을 보완(제4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추가
	간접공사비의 비정상적인 계상	표준하도급계약서 보완(건설업종)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산출내역 추가(별지)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	불공정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보완(제34조의 8) - 간접비 전가를 부당특약으로 설정
	발주자의 간접비 미지급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을 보완(제16조, 제16조의2) - 발주자의 간접비 지급 여부와 관련없이 하수급인 간접비 지급방안 마련
	공기 연장시 간접비 분쟁 요인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관련 서류 구비 및 체계적 관리

- 1) 간접비 미계상의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사유 항목에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상 비목(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통합하거나 물량 등을 축소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추가(하도급법 제4조),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간접비 산출내역' 명시(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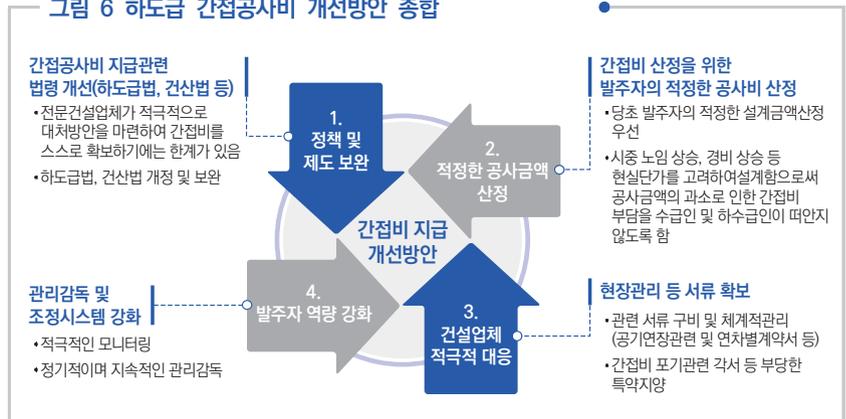


현행	개정안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p> <p>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②~⑥생략</p>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p> <p>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p> <p>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p> <p>②~⑥생략</p>
현행	개정안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p> <p>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p> <p>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p> <p>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p> <p>②~④ 생략</p>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p> <p>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p> <p>1. 설계변경, 목적물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p> <p>2. 생략</p>

## 결론

하도급거래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이 수급인과의 거래관계에서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문건설업체의 간접비 미지급은 근본적으로 원·하도급의 불공정한 거래구조로 인한 것으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간접비를 스스로 확보하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간접비용이 적절하게 지급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공사금액 산정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 능력 등 전문건설업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6 하도급 간접공사비 개선방안 종합



참고문헌

1. 김태형, 간접비 소송의 주요 쟁점, 변호사, 2016.
2. 이보라, 박승국,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미지급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7.
3. 정기창,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예측을 위한 산정모델, 동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4. 조현정, 하도급 간접공사비 계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5. 황문환, 정유철, 이강만, 공공공사의 공기연장 이슈에 따른 간접공사비 최신 판례 조사 및 분석 -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판례 중심으로-, 법무법인(유)윤출문, 2017.
6.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한 종합대책, 2017.
7.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2019.